



제 1038 호

2012년 4월 13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칙 제800호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2
공 고	
○ 공고 제2012- 567호	선학경기장 진입로 개설 및 남동산업단지 사거리 고가차도 설치공사 토지 출입허가 열람 공고 14
○ 공고 제2012- 571호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 공고 20
○ 공고 제2012- 576호	제19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임시회 부의안 건 공고 21
○ 공고 제2012- 577호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 예고통지 불능자에 대한 공고 23
○ 공고 제2012- 580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4
○ 공고 제2012- 581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25
○ 공고 제2012- 582호	공시송달 공고 30
○ 공고 제2012- 587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규위반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33
○ 공고 제2012- 595호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인가(변경)를 위한 공람 공고 34
○ 만수2동 공고 제2012- 17호	만수2동 20통,27통장 공개모집 공고 38
고 시	
○ 고시 제2012- 43호	도로명주소 고시 39
○ 고시 제2012- 4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3-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43

회 람								
----------------	--	--	--	--	--	--	--	--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2년 4월 13일

남동구 규칙 제80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이라 함은 도서가 비치된 장소에서 도서 등을 보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라 함은 도서를 지정된 절차에 의하여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입실”이라 함은 도서관내의 각종 도서 및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열람·대출하기 위하여 지정된 절차에 따라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퇴실”이라 함은 도서열람 및 대출과정을 마치고 도서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5. “독서회원”이라 함은 도서관의 대출등 도서관 서비스를 받고자 신청 및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라 한다)란 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통합도서회원”(이하 “통합회원”이라 한다)이란 회원 중 통합서비스 회원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에 적용한다

제4조(운영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기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그 외 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등의 이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 14일 전에 미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

2. 도서관 안에서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도서관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오손하는 행위

4. 그 밖의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독서회원) ① 관장은 독서인구의 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독서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회원의 자격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학교나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관장이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서회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독서회원(통합회원 포함)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진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이 없는 경우 도서관에서 촬영 가능)를 지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학생이상 일반인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신분증

2.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보호자 동의 서명(회원가입신청서)

3. 인천시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교나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사람 : 재직(학)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

4. 인천광역시에 거주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는 현재 거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신분증

④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⑤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리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에는 보호자 회원증을 대리로 사용할 수 있다.

⑥ 회원증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분실(훼손)신고 후 7일 이후에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 기간중 대출은 불가능하다(재발급시 제3항의 구비서류 지참).

제8조(독서회원의 자격상실) ① 독서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직권취소 할 수 있다.

1. 대출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
 2. 대출도서 반납을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원상회복 요청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회원자격 취소 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재가입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열람) 자료의 열람은 도서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반환) 열람자가 퇴관할 때에는 열람 자료를 제자리에 두거나 도서관 관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대출) ①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자료 대출은 1인당 최대 5권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 이내로 한다.

③ 대출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7일간 가능하며,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예정일 3일 전부터 직접방문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자료의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④ 동일인이 반납자료를 다시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납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할 수 있다.

제12조(대출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의 저작권보호 대상 자료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3조(자료반납) ① 대출한 자료는 반납 예정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 ②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반납도서의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 ③ 반납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에 반납한다.

제14조(자료복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 3. 「저작권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 4. 그 밖에 관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5조(기증자료) 관장은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자료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 2. 자료이용자의 편의도모
-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 4. 도서관내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제고

③ 자료의 폐기·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문화관광부 고시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준용한다.

- 1. 이용가치의 상실
-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 4. 자료대출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자료의 회수 불능

제17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

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작은도서관 운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자료의 대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공립 작은도서관 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도서관 설립 취지에 현저히 위반되는 활동을 한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0조(공립 작은도서관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의 독서의욕 고취 및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의 달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③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
- ④ 시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민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에 관한 특례) 도서관의 조직과 인력이 구성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허가서’의 “도서관장”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도서관 이용시간 (제4조 관련)

구 분	이용시간		이용대상	비 고
	화 ~ 금	토 · 일		
자 유 열 란 실	06:00~22:00		청소년(중학생)이상	
종 합 자 료 실	09:00~18:00		청소년(중학생)이상	
어린이자료실	09:00~18:00	09:00~17:00	유아 · 어린이 및 보호자	
디지털자료실	09:00~18:00		청소년(중학생)이상	

[별지 제1호서식]

회원가입 신청서

회원번호 : [] * 회원번호는 쓰지 마세요								
성명		성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				휴대폰				
직장전화				E-Mail				
학교	학교 학년 반			비밀번호 (숫자4자리)				
제2연락처	성명	(본인과의 관계:)		전화				

- ▷ 개인정보 변경, 도서대출카드 분실시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합니다.
- ▷ 유아 및 초등학생은 보호자의 동의서명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통합도서서비스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귀 도서관의 관계규정, 공공도서관 통합도서관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통합도서관서비스에 따른 개인의 등록정보 공유에 이의없음을 동의합니다.

$\overline{0}H$

담당자확인

신 청 인 : (서명)

보호자성명 : (서명)

() 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 사용신청서

접수번호 : _____

단 체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단 체 의 소 재 지 또는 대표자주소				연 락 처	
공연·행사 명칭					
공연·행사 내용					
사 용 기 간	. . . ~ . . .			사용인원	명
사 용 료					
첨 부 서 류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부대설비 추가설치 사항 등)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 도서관장 귀하

-----절----- 취 ----- 선 -----

접수번호 : _____

()도서관 사용신청 접수증

○ 사용기간 : . . . ~ . . .

○ 신청인 : ○ 생년월일 :

○ 주 소 :

위와 같이 ()도서관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도서관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사용 허가서

(허가번호 :)

사 용 자	주 소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	☐ 문화교실 ☐ 시청각실 ☐ 부대설비(내역 :)			
사 용 기 간	. . . : ~ . . . :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사 용 료	₩ 원 (금 원)			
허 가 조 건	○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 도서관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 사용종료 후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도 서 관 장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에 따라 휴관일의 지정, 회원가입 및 회원증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공공도서관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
- 공공도서관 독서회원 및 자료대출·반납에 관한 사항
-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독서의 달 행사 등에 관한 사항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567호

선학경기장 진입로 개설 및 남동산업단지 사거리 고가차도 설치

토지출입 통지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남동경기장 건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출입 통지 요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점유자 등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 4. 9.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2. 사업의 명칭 : 선학경기장 진입로 개설 및 남동산업단지 사거리 고가차도 설치
3. 출입할 토지 : “별첨”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비치)
4. 출 입 기 간 : 2012. 4. 12 - 2012. 4. 20
5. 출 입 목 적 :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을 위한 측량 및 조사
6. 열 랐 기 간 : 2012. 4. 9 - 2012. 4. 23(15일간)
7. 관 련 법 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출입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통지를 한 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 하지 못한다.
8. 기 타 사 항
출입토지 목록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 이해관계인께서는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재무과(☎032-440-415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미 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 2014 인천AG 선학경기장 진입로 개설공사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자			비고
	동	지번		지적	편입	잔여	공유지분	성명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성명	주소	우편번호	
1	연수구 선학동	68-4	제	1,375	99	1,276		인천광역시							
2	연수구 선학동	68-38	제	1,502	98	1,404		인천광역시							
3	연수구 선학동	68-39	천	1,490	206	1,284		인천광역시							
4	연수구 선학동	339	천	76,790	769	76,021		국	건설교통부						
5	남동구 남촌동	604	천	17,936	594	17,342		국	건설교통부						
6	남동구 남촌동	600	제	7,527	90	7,437		국	재무부						
7	남동구 남촌동	510-225	답	1,255	1,255		3/17	김종순	인천시 남구 용현동 100-18						
							2/17	김연중	인천시 남구 학익동 48-14 신동아아파트 21동 505호						
							2/17	김선중	인천시 남구 용현동 100-18						
							2/17	김길중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46 강선마을 402동 1204호						
							2/17	김세중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83 삼환아파트 103동 1405호						
							2/17	김선희	인천시 남구 용현동 100-18						
							2/17	김남중	인천시 남구 용현동 100-18						
							2/17	김묘중	인천시 남구 학익동 48-14 신동아아파트 21동 505호						

8	남동구 남촌동	510-230	답	2,461	2,461			김용목	인천시 남구 용현동 100-18						
9	남동구 남촌동	510-139	제	673	229	444		인천광역시							
10	남동구 남촌동	510-140	천	518	145	373		인천광역시							
11	남동구 남촌동	512-69	답	44	44			강정복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98-1						
12	남동구 남촌동	512-31	도	8,951	7	8,944		인천광역시							
13	남동구 남촌동	598	도	52,671	46	52,625		국	건설부						
14	남동구 남촌동	601	구	14,596	71	14,525		국	농림부						

○ 2014 인천 AG 남동산업단지 사거리 고가차도 설치공사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자				비고
	동	지번		지적	편입	잔여	공유지분	성명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성명	주소	우편번호	권리의 종류	
1	남동구 남촌동	541-13	도	471	471			국	국토해양부							
2	남동구 남촌동	535-6	도	508	508			국	국토해양부							
3	남동구 남촌동	598	도	52,671	138	52,533		국	국토해양부							
4	남동구 남촌동	510-93	도	217	96	121		인천광역시								
5	남동구 남촌동	510-173	도	366	366			국	국토해양부							
6	남동구 남촌동	510-227	전	57	57			나필순	인천시 남구 학익동 48-14 신동아아파트 21-1505			남인천농업 협동조합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334-1		근저당지상권	
7	남동구 남촌동	510-179	도	997	997			국	국토해양부							
8	남동구 남촌동	510-231	전	239	239			심상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70-125 동아아파트 19동 1803호							
9	남동구 남촌동	510-94	도	7,039	6,651	388		인천광역시								
10	남동구 남촌동	510-232	전	39	39		1/2	허영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25-7 대우2차아파트 106-1104			남동농업 협동조합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14-1		근저당지상권	
							1/2	허혜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25-7 대우2차아파트 106-1104							
11	남동구 남촌동	510-183	도	678	392	286		국	국토해양부							
12	남동구 남촌동	510-108	도	4,855	3,846	1,009		인천광역시								
13	남동구 남촌동	510-110	도	707	486	221		국	국토해양부							

14	남동구 남촌동	604-13	천	587	70	517		국	국토해양부							
15	남동구 남촌동	625-76	잡	40	40		1798/10370	인천광역시								
							8572/10370	김병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43-35							
16	남동구 남촌동	608-4	도	3226	31	292		인천광역시								
17	남동구 남촌동	642	도	42,892.3	4,953	37,939.3		인천광역시								
18	남동구 남촌동	643	도	21,436.3	4	21,432.3		인천광역시 남동구								
19	남동구 남촌동	609-11	도	688.1	8	680.1		인천광역시								
20	남동구 남촌동	510-228	도	699	699			국	국토해양부							
21	남동구 남촌동	601	구	14,596	1,293	13,303		국	농림수산식품부							
22	남동구 남촌동	510-92	도	2190	721	1,469		인천광역시								
23	남동구 남촌동	510-226	유	42	42			합자회사 도진기업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510							
24	남동구 남촌동	510-235	도	1,749	1,749			국	국토해양부							
25	남동구 남촌동	510-233	답	67	67			허욱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510-59							
26	남동구 남촌동	510-184	도	1,487	1,295	192		국	국토해양부							
27	남동구 남촌동	596-3	전	23	23			허욱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510-59							
28	남동구 남촌동	510-96	도	4,899	4,899			인천광역시								
29	남동구 남촌동	510-177	도	184	67	117		국	국토해양부							
30	남동구 남촌동	600	제	7,527	307	7,220		국	재무부							

31	남동구 남촌동	604-2	천	7222	333	6829		국	국토해양부							
32	남동구 남촌동	604-14	천	4,757	195	4,562		국	국토해양부							
33	남동구 남촌동	627-10	천	10,173	651	9,522		국	국토해양부							
34	남동구 남촌동	625-34	도	1,155	819	336		국	국토해양부							
35	남동구 남촌동	625-32	도	8,146	6,327	1,819		인천광역시								
36	남동구 남촌동	606-3	도	3,462	25	3,212		인천광역시								
37	남동구 남촌동	638	도	3,536.3	6	3,530.3		인천광역시 남동구								
38	남동구 남촌동	607-3	도	6,796	29	6,506		인천광역시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571호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4 월 10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도로의 종류	구도	노 선 명	중(국)2-766, 중(국)3-24, 소(국)1-2, 소(국)1-5, 소(국)2-110
공사의 종류	인천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관련 지구외 도로「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신청		
구 간	- 남동구 구월동 1188대부터 남동구 구월동 852-8도까지 (430m) - 남동구 구월동 257-4도부터 남동구 구월동 257-2도까지 (91m) - 남동구 구월동 1080-8구부터 남동구 구월동 1072-58도까지 (70m) - 남동구 구월동 1072-62도부터 남동구 구월동 1329-15도까지 (167.5m) - 남동구 구월동 1332도부터 남동구 구월동 258대까지 (37m)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일원		
착수예정일	2012년 4월 16일	준공예정일	2015년 12월 30일
이 유 :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공사에 따른 지구외 인접도로 개선을 통한 사업지구 접근성 확보 및 기성 시가지와의 연계성, 교통성 향상 도모			
기타사항 : 관계기관 협의 조건 및 승인조건(인천시 남동구청 열람가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 576호

부의안전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전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제19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안 건 명

-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2차)
 - 【(가칭)행복나눔센터 신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 공고기간

- 2012. 04. 10. ~ 제19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종료 시까지

3. 기 타

○ 부의안건의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기획예산실(☎453-2094)에 비치하였으며, 또한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공람)이 가능합니다.

2012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577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21년3100 [배달결과 : 2012.04.05 이사불명 반송]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12.05.03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저당)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2. 04. 10 ~ 2012. 05. 03.

2. 대상 자동차

신 청 대 상 차 량			이해관계내용	이 해 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 명	사 용 본 거 지			
21년3100	성낙원	인천. 남동. 구월동	자동차 가압류 의정부지방법원 2006카단2613 압류일자:2006.05.15	이 영 식	경기 의정부 송산1동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팀 (☎453-2941)

2012. 04. 1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580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2. 4. 25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4. 공 고 기 간 : 2012. 4. 13 ~ 2012. 4. 23(11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간석4-75	골든벨	최희자	석정로584, 2층 (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06.2.20	2012.4.25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2012. 4. 23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 453-2622

2012. 4. 1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581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1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2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 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기 간 : 2012년 4월 13일 ~ 5월 2일
- 장 소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 및 남동구청 홈페이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2년 4월 13일 ~ 5월 2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
- 제출방법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별지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4.1>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용	열람지가 원/m ²	의견가격 원/m ²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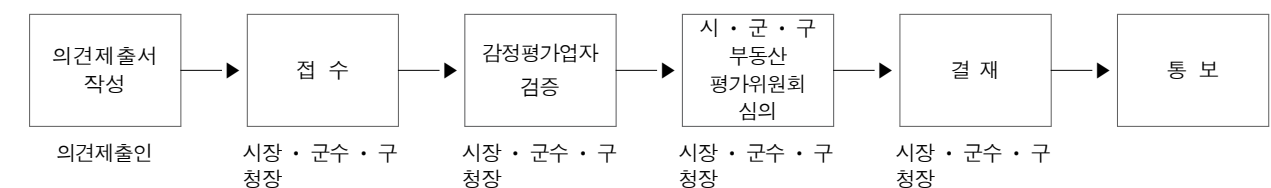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2. 1. 1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 지역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 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582호

공시송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소재지)의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등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고지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박연호	410421-*****		별도열람	
승일카센터	124-43-*****		별도열람	
조일서점	641001-*****		별도열람	
윤홍섭	310215-*****		별도열람	
채민네	690303-*****		별도열람	
에코키즈 어린이집	650730-*****		별도열람	
이순산	490810-*****		별도열람	
배관자재 명지상사			별도열람	
미화원 휴게소			별도열람	

※ 도로명주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전화:032-453-2470) 및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 기간 : 2012.4.12(목) ~ 2012.4.27(금) 16일간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일 : 2012.02.17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02.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고지내용의 정정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고지 공시송달 대상

연번	고지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및 부여사유
1	박연호	410421-*****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2	승일카센터	124-43-*****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3	조일서점	641001-*****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4	윤흥섭	310215-*****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5	재민네	690303-*****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6	에코키즈어린이집	650730-*****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7	이순산	490810-*****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8	배관자재 명지상사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9	미화원 휴게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587호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분명 및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4월 13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송달대상자 : 문병세 외 2인

성명	주소	처분사유	처내분용	비고
문병세	인천시 남동구 당좌로11, 나동 202호(구월동,영진빌라)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6바5084
권태성	인천시 남동구 호구포로739번길 80-1, 2동401호(구월동,롯데환타빌)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5아4092
홍순용	인천시 남동구 장아산로181, 202동 101호(서창동,태평아파트)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4바9482

2. 공시송달기간 : 2012. 04. 13 ~ 2012. 04. 27 (15일간)

3. 내 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차고지 외 밤샘주차) 준수사항 위반

4. 참고사항

처분통지서 수령대상자는 2012.04.27일 까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453-2914)로 오셔서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기타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453-2914, FAX 453-29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597호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인가(변경)를 위한 공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의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동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공람 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2. 4. 1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변경없음)
 - 종 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 명 칭 :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
 - 면 적 : 79,489.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4번지)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2006.12.30. ~ 2014.12.31.

5.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있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당초	변경
계		79,489.4	100.00		
공동주택 용지	소계	61,153.0	76.93	단지내상가 및 주민공동시설 포함	단지내상가 및 주민공동시설 포함
	1BL	22,583.0	28.41		
	2BL	38,570.0	48.52		
정비기반 시설용지	도 로	11,376.4	14.31	무상귀속	무상귀속
	경관녹지	1,934	2.43	무상귀속 (2개소)	무상귀속 (2개소)
	소공원	1,503.0	1.89	무상귀속 (2개소)	무상귀속 (2개소)
	노외주차장	1,765.0	2.22	무상귀속	무상귀속
유보지		424.0	0.54	무상귀속	-
종교용지		1,334.0	1.68	존치 1,192㎡	존치 1,192㎡

나.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등 건축계획(변경있음)

구분		단위	내역							
			1BL			2BL				
공동주택	대지면적	㎡	22,583.00			38,570.00				
	건축면적	㎡	기정 : 3,331.02 변경 : 3,373.76			기정 : 5,424.49 변경 : 5,438.70				
	지상연면적	㎡	기정 : 52,437.35 변경 : 52,437.35			기정 : 87,170.50 변경 : 87,170.50				
	지하연면적	㎡	기정 : 21,999.10 변경 : 21,823.91			기정 : 33,003.76 변경 : 30,526.66				
	건폐율	%	기정 : 14.75% 변경 : 14.94%			기정 : 14.06% 변경 : 14.10%				
	용적률	%	기정 : 232.09% 변경 : 232.09%			기정 : 225.91% 변경 : 225.91%				
	최고높이	층	기정 : 지하3층, 지상26층 변경 : 지하3층, 지상26층			기정 : 지하3층, 지상28층 변경 : 지하3층, 지상28층				
	주차대수	대	지상	기정:0(0.0%) 변경:16(2.5%)		기정:645 변경:645	지상	기정:3(0.3%) 변경:67(7.2%)		기정:929 변경:929
			지하	기정:645(100%) 변경:929(97.5%)			지하	기정:926(99.7%) 변경:862(92.8%)		
조경면적	㎡	기정 : 9,665.53(42.8%) 변경 : 9,484.36(41.9%)				기정 : 16,823.67(43.6%) 변경 : 16,571.76(42.9%)				

6.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단위	내역	
					1BL	2BL
건설 호수	공동 주택	임대	60㎡이하	세대	178	-
			40㎡이하	세대	138	-
		분양	85㎡초과	세대	-	-
			85㎡이하	세대	185	704
			60㎡이하	세대	86	88
		계				587세대

7.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도로(변경없음)

규 모				연장(m)	기점	종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대로	1	14	35-38	12,450	서해안로	중봉로	일부구간 확폭 (L=181m)
중로	2	448	15-18	257	대1-14	중2-377	구역 내 구간
중로	2	377	15	339	소3-52	대1-13	구역 내외 구간 포함
소로	1	229	10.5	140	소3-64	중2-377	구역 내외 구간 포함
소로	2	227	9	115	소3-64	대1-14	구역 내외 구간 포함
소로	2	56	8~9	251	소3-51	대1-14	구역 내외 구간 포함

나. 주차장(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주차장	노외주차장	간석동 224-80 일원	1,765	

다. 녹지(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간석 녹지-1	경관녹지	간석동 911-1	656	
간석 녹지-2	경관녹지	간석동 912-4	1,278	

라. 공원(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²)	비고
간석소공원-1	소공원	간석동 224-219번지 일원	795	
간석소공원-2	소공원	간석동 224-713번지 일원	708	

8.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2동 공고 제2012-17호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지역의 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12.4.12~12.4.25 (14일간)

※ 단,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한함

□ 접수장소 : 만수2동 주민센터(사무소)
(☎ 453-5400)

□ 대상지역 : 20통, 27통

□ 신청 자격 및 조건

- 해당 통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녀
-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방자치 시대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 신청서류 : 이력서(반명합판 사진첨부), 자기소개서 각 1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발방법 :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 면접심사

□ 면접일시 : '12.4.27(금)

※ 후보자가 많을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접방법 : 개별면접

□ 면접장소 : 만수2동 주민센터 2층 도서열람실.

2012. 4. 12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2동장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2-4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4. 1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88번길 19외 4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47번길 82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5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04.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남동구	간석동	920-34	인천광역시남동구	호구포로	888번길 19	20091116	호구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88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4.13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호구포로888번길 19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9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남동구	만수동	1119-1	인천광역시남동구	만수서로	66	20091116	만수로의 서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2.04.13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수서로 66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6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남동구	만수동	954-7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로	372번길 21-11	20091116	구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2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4.13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로372번길 21-11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1-11을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남동구	논현동	585-12	인천광역시남동구	은봉로	255번길 5-12	20091116	은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5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4.13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은봉로255번길 5-12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12를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남동구	서창동	서창2단지 초 한빛초등학교	인천광역시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90-28	20120328	서창남로 기준으로 순환하는 도로 의미를 인용하여 제명	2012.04.13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서창남순환로 190-28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90-28을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47번길	8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42-75	2012.04.13	건물번호 부여 오류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로76번길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62	2012.04.13	폐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로76번길	3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63	2012.04.13	폐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로76번길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70, 271-5	2012.04.13	건물번호 부여 오류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재울로30번길	46-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64-2	2012.04.1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재울로	6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76-2	2012.04.1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재울로	65-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76-10	2012.04.1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277번길	4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8-4	2012.04.1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2-4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3-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남동구 고시 제2011-87(2011.10.28.)호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3-3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2. 4. 1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구월동 소3-3호선)
 - 명 칭 : 구월동 소3-3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B=6m, L=83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대한예수교 침례회 남인천교회(대표 : 오성균)
 -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43-11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기정 : 2008. 8.29. ~ 2012. 2.28.
 - 변경 : 2008. 8.29. ~ 2012. 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